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쟁점

-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을 중심으로 -

이 재 진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
- 미 Univ. of Iowa 석사, 미 Southern Illinois Univ. 박사
-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언론학회 이사, 방송학보 편집위원
- 현(現)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한국방송학회 연구이사, 서울신문 명예논설위원
- 논문 및 저서: 『언론 자유와 인격권』,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외 다수

1. 문제제기

언론법제 영역은 언론과 법의 접점에 위치하여 언론에 대한 이해와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전문분야이다(이재진, 2002).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은 교육 담당자와 교육 내용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한국 대학에 있어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여타 신문방송학 교육과 그 역사적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언론법제 교육이 시작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였다(차배근, 1997).¹⁾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장호순, 1998; Lee, 2005).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는가를 정리해 보는 것은 언론법제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언론법제 교육의 필요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곳은 언론현업이지만 언론현업에서 별도의 언론법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언론의 윤리나 법적인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되거나 특정 언론사가 거론될 때 형식적이고 임시적으로 언론법이나 윤리교육이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 이외의 언론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언론법제 교육은 한국언론재단의 기자연수 프로그램과 언론재단 산하 한국언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겸임교수 과정과 주제별 전문 과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²⁾ 따라서 언론법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쟁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남재일·최민재, 2005).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체계적인 언론법제 교육은 결국 대학에서 예비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1) 미국의 경우 언론법제가 하나의 독립된 분야로 정립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라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경우 언론법제 교육의 시작은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다(Gillmor & Dennis, 1989).

2) <http://www.journalismschool.kr>. 한국언론재단에서 개설한 저널리즘 스쿨. 2007년도 겸임교수 과정과 전문분야 과정에서는 주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다툼에 대한 것과 법률 실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언론의 사회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한
환경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언론법제 교육 필요성 높아져**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³⁾ 적어도 한 학기 이상에 걸쳐 앞으로 언론에 진출하고자 희망하는 예비언론인들에게 언론법제와 관련된 기본적 지식과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이론적이고 현실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대학이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어 왔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법학계통의 전공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언론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언론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언론법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염규호, 1999). 실제로 언론법제 교육은 저널리즘 교육과 함께 실시되어야 하는 특성상 한국 대학에서의 교육도 법학분야보다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그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비록 최근 언론법제와 관련된 과목들이 법학분야에서 간헐적으로 개설되고 있으나 이는 대개 헌법이나 법학개론에서 일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론학 분야에서의 언론법제 연구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언론법제 교육의 필요성은 지난 20여 년 간 특히 강조되어 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언론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언론매체가 수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이승선, 2005; 이재진, 2002). 이는 언론보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개인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인권의식이 확대되고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확장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Park, 1993; Youm, 1996; 정진석, 1999). 아울러 언론의 공적 기능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소송 건수의 증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이재진, 2006). 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언론에 대한 규제가 개인들의 법적 대응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Smith, 1980).

이처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한 환경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언론법제 교육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중재신청건수도 증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줄여보려는 언론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점증하는 소송이나 중재신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언론법제나 윤리 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배태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직 언론인들에 대한 재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대학의 예비언론인들이 언론법제 수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수강하면서 언론법제의 본질을 체화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요청되고 있다.⁴⁾

3) 남재일·최민재(2005, p. 59)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인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인 언론인들에 대한 조사의 경우 언론법제 관련 과목에 대한 기대는 높은 편이지만 실제 만족도가 여타 분야의 과목에 비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언론실무와도 가장 관련이 많은 언론법제 교육이 수강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물론 언론대학원에 다니는 현직 언론인들의 재교육도 포함되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에서의 언론법제 교육만을 다루기로 한다.

4) 비록 국가나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의 규제는 아니지만 언론에 대한 인격권 소송은 언론에 있어서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올 뿐 아니라, 언론인에 있어서는 취재·보도과정상의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언론인들의 경우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소환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불편함을 겪게 된다.

2. 언론법제 교육의 역사와 현황

1) 언론법제 교육의 발전과정

한 사회의 언론법제는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관계지형을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론법은 한국 정부와 언론 그리고 국민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보여준다. 따라서 언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Bedeski, 1994). 동시에 주어진 환경에서 언론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찰이 바로 언론법제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언론법제 교육과 직결된다.

한국의 언론법제 교육은 1950년대 여타 언론학 영역의 교육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교육의 중요성이 대학과 언론현업에서 실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장호순(1998)에 따르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이면에는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 문제 해결방식으로 '법치'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 법원은 오랫동안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의 공정한 적용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언론법제 교육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저널리즘 교육 중의 한 영역인 언론법제 교육이 한국 대학에서 시작되었을 때 이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대개 언론업계 경험이 있으며, 일본을 배경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⁵⁾ 즉, 현업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언론관련 학과를 세우고 신문학회를 창설하였으며 언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였다. 1953년 홍익대학교에 한국 최초의 신문학과가 창설되었고, 1955년 커리큘럼에 '신문윤리법제'라는 과목이 4학년 필수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이재진, 2002).

당시 언론법제 과목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언론법제 과목은 저널리즘과 법 분야의 지식을 모두 요구하는 상급생(4학년) 교과목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법과대학에서 개설하는 '법학개론'을 4학년 전에 선행과목으로 수강해야 했다. 즉, 구체적인 언론관계법 분야에 대한 수업을 위해서 기초적인 법적 지식을 먼저 요구하였는데, 현재의 한국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은 이와 다르다.

언론법제 교육은 1962년 홍익대학교 신문학과가 당시 새롭게 제정·반포된 교육조례 위반으로 폐과되면서 중단된다. 그러나 신문방송관련 학과들이 점차 설립되면서 언론법제 교육은 조금씩 더 많은 대학들에 의해서 수용된다. 1956년 중앙대학교, 1960년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 한양대학교, 1965년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1966년 성균관대학교에 신문방송 관련 학과가 각각 문을 열었다. 홍익대학교 이후 설립된 신문방송 관련 학과들이 어떻게 언론법제 교육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1963년 개설된 한양대학교 신문학과와 경우 개설 초기부터 현재까지 언론법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현재 전국의 4년제 대학 중 약 69개 학교에서 언론법제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본의 소피아 대학은 1932년, 한국보다 약 21년 앞서 언론관련 학과를 개설하였다(Lee, 2005).

〈표 1〉 언론법제 강의 개설 학과 현황

| 번호 | 대학명 | 교과목명 | 담당교·강사 | 학부·학과 |
|----|---------|---------------|---------|--------------------------|
| 1 | 강원대학교 | 언론법과 윤리(4-1) | 정 윤 식 | 정치외교신문방송학과(신문방송학과) |
| 2 | 건국대학교 | 언론윤리론(3) | 유 일 상 | 신문방송학과 |
| 3 | 경기대학교 | 매체법제론 | 윤 성 옥 | 다중매체영상학부(정치매체관리학전공) |
| 4 | 경남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김 영 주 | 정치언론학부(언론홍보학/정치외교학) |
| 5 | 경북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김 재 홍 | 신문방송학과 |
| 6 | 경성대학교 | 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 이 의 자 | 신문방송학과 |
| 7 | 경운대학교 | 언론윤리와 법제 | 민 정 식 | 신문방송광고학부(매체정보학전공) |
| 8 | 경주대학교 | 언론법제론(4-2) | | 방송언론광고학부(광고법제론) |
| | | 광고윤리법제론(4-2) | | |
| 9 | 경희대학교 | 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 임 병 국 | 언론정보학부 |
| 10 | 계명대학교 | 언론정책 및 법제론 | 김 세 철 | 신문방송학/광고홍보학/디지털영상학전공 |
| 11 | 고려대학교 | 언론법제 | | 언론학부(언론, 정보/방송, 영상/광고홍보) |
| 12 | 고신대학교 | 광고심리와 윤리(4-2) | 김 은 진 | 광고홍보학과 |
| 13 | 광운대학교 | 미디어윤리법제 | 주 동 황 | 미디어영상학부(신문방송/멀티미디어/방송연예) |
| 14 | 광주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 언론광고학부(신문방송전공) |
| 15 | 국민대학교 | 미디어법과 윤리 | 조 연 하 | 언론정보학부(언론학전공) |
| 16 | 극동대학교 | 미디어윤리법제(3-2) | | 방송영상학부(영상산업학전공) |
| 17 | 단국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손 태 규 | 언론영상학부(언론홍보학전공) |
| 18 | 대구가톨릭대 | 언론윤리법제 | 최 경 진 | 언론광고학부(언론영상전공) |
| 19 | 대구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엄 기 열 | 국제사회언론학부(언론매체학전공) |
| 20 | 대진대학교 | 미디어법제론 | 황 우 권 | 신문방송학과 |
| 21 | 동명정보대학교 | 미디어정책법제론 | 유 승 관 | 신문방송학과 |
| 22 | 동서대학교 | 방송윤리법제(2-2) | 구 종 상 |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디지털방송) |
| 23 | 동아대학교 | 언론법제론 | 이 진 구 | 신문방송학과 |
| 24 | 동의대학교 | 언론법의 이해와 활용 | 문 종 대 | 언론광고학부(신문방송학전공) |
| 25 | 목원대학교 | 광고윤리법제(4-1) | 이 승 선 | 광고홍보학 |
| 26 | 부경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차 용 범 | 신문방송학과 |
| 27 | 부산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김 문 수 | 신문방송학과 |
| 28 | 서강대학교 | 언론법제론 | 김 영 주 | 신문방송학과 |
| 29 | 서울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김 서 중 | 언론정보학과 |
| 30 | 서울여자대학교 | 미디어윤리법제(3-2) | 임정수/조연하 | 정보영상학부 |
| 31 | 선문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이 연 | 언론광고학부 |
| 32 | 성공회대학교 | 미디어법과 정책 | 김 서 중 | 신문방송학과 |
| | |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 최 영 목 | 신문방송학과 |
| 33 | 성균관대학교 | 방송법제윤리연구 | | 신문방송학과 |
| 34 | 세명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 미디어창작학과 |

특집 /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과 과제

| 번호 | 대학명 | 교과목명 | 담당교·강사 | 학부·학과 |
|----|----------|-----------------|---------|--------------------|
| 35 | 세종대학교 | 언론법제 | | 신문방송학과 |
| 36 | 수원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김 광 옥 | 언론정보학과 |
| 37 | 숙명여자대학교 | 언론법제 및 윤리 | | 정보방송학과 |
| 38 | 순천향대학교 | 언론법제론 | 장 호 순 | 신문방송학과 |
| 39 | 송실대학교 | 언론광고윤리법제 | | 언론홍보학과 |
| 40 | 신라대학교 | 광고홍보윤리법제 | | 광고홍보학과 |
| 41 | 연세대학교 | 미디어법제론 | | 신문방송학과 |
| 42 | 영남대학교 | 방송법제와 정책 | | 언론정보학과 |
| 43 | 영산대학교 | 방송법제론 | | 영상미디어전공 |
| | | 언론윤리법제론 | | 신문방송전공 |
| 44 | 우석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 신문방송학과 |
| 45 | 원광대학교 | 언론윤리법제론 | 김 병 국 | 정치행정언론학부 - 신문방송학전공 |
| 46 | 이화여대 | 표현의 자유와 언론윤리 | | 사회과학부 - 언론정보학 |
| 47 | 인제대학교 | 커뮤니케이션 법제 I, II | 나 낙 균 | 언론정치학부 - 언론광고학과 |
| 48 | 인천대학교 | 미디어윤리 법제론(3-1) | 반 현 | 신문방송학과 |
| 49 | 인하대학교 | 언론정보법제론(3-1) | | 사회과학부 - 언론정보학 |
| 50 | 전남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 신문방송학과 |
| 51 | 전북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 언론심리학부 - 신문방송학 |
| 52 | 제주대학교 | 언론법제론 | 김 경 호 | 언론정보학과 |
| 53 | 조선대학교 | 미디어윤리(3) | 이 동 근 | 신문방송학과 |
| 54 | 중부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 언론방송영상학부 - 신문방송학과 |
| 55 | 중앙대학교 | 광고윤리법제 | | 정경대학 - 광고홍보학과 |
| 56 | 창원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 언론정보학과 |
| 57 | 청운대학교 | 광고윤리법제 | | 광고홍보학과 |
| 58 | 청주대학교 | 광고법제윤리 | | 언론정보학부 - 광고홍보학 |
| | | 언론윤리법제론 | | 언론정보학부 - 신문방송학 |
| 59 | 충남대학교 | 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 이 승 선 | 언론정보학과 |
| 60 | 한국디지털대 | 언론윤리와 법규 | | 언론영상학과 - 언론정보전공 |
| 61 | 한국예술종합학교 | 영화와 법제 | | 영상이론과(영상기획) |
| | | 방송윤리와 법제 | | 방송영상과 |
| 62 | 한국외국어대학 | 미디어윤리와 법(4-2) | 김 우 룡 | 언론정보학부 |
| 63 | 한동대학교 | 미디어윤리와 법제 | | 언론정보학과 |
| 64 | 한림대학교 | 미디어윤리 | 김 옥 조 | 언론정보학부 - 언론전공 |
| 65 | 한서대학교 | 언론법제론 | 이 용 성 | 신문방송학과 |
| 66 | 한신대학교 | 광고윤리법제 | | 광고홍보학과 |
| 67 | 한양대학교 | 언론법제 | 이재진/박영상 | 신문방송학과(서울/안산) |
| 68 | 협성대학교 | 광고윤리와 법 | | 경상학부 - 광고홍보학과 |
| 69 | 호남대학교 | 언론윤리법제 | | 신문방송학과 |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 중요성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

2) 언론법제 교과목 개설 상황과 강의 내용

언론법제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서 2005년 3월부터 5월에 걸쳐서 언론법제 강의가 실제로 개설되고 있는 대학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언론 관련 학과(광고관련 학과 포함)를 가지고 있는 83개 대학 중 70개 대학이 언론법제 관련 강의가 학부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84.3%의 언론관련 학과에서 언론법제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이러한 결과는 2001년 5월 18일 ~ 19일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기획세션에서 발표된 언론법제 교육현황에 비추어 보면 차이가 있다. 2001년 당시 발표된 언론관련 연구와 교육에 대한 백서에 따르면 언론관련 학과가 있는 72개 대학 중 49개 대학에 언론법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학회, 2001). 즉, 언론 관련 학과 중 약 68%가 언론법제 교육을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있다. 4년이 경과한 후 그 비율이 84.3%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은 현재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간략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2007년 커리큘럼에 언론법제 관련 과목을 두고 있는 학교는 전체 69개교에 이른다. 그러나 얼

마나 많은 학교들이 언론법제 과목을 실제로 개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표 1〉에서 보듯이 언론법제 관련 과목의 교과목명이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된 교과목명은 ‘언론윤리법제(론)’ 이었고 다음으로 ‘언론법제론’ 과 ‘광고윤리법제(론)’ 그리고 ‘미디어 윤리법제(법제윤리)’ 가 뒤를 이었다. 교과목명은 대개 언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방송, 광고와 함께 법, 법제, 윤리법제, 정책 등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교과목명이 임의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교과목명 만큼 언론법제 교육은 누가 강의를 맡는가에 따라서 강의 내용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 당시 언론법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거나 또는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교·강사들에게 강의계획서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18개 학과에서 강의계획서를 보내왔다. 여기에 2007년 새롭게 강의계획서를 보낸 3개 학과와 인터넷으로 강의계획서의 내용이 확인 가능한 1개 학과를 포함하고 2005년 교·강사들에게 강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강의계획서에 교과내용을 살펴보았다.⁶⁾

이를 토대로 언론법제 과목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교육되는 10개의 주제를 선택하였다. 이들은 (1) 명예훼손, (2) 사생활 침해, (3) 표현의 자유와 언론 이론, (4) 정보공개법과 알권리, (5) 광고관련법, (6) 음란, (7) 방송관련법, (8) 저작권법, (9) 뉴미디어

6) 강의계획서를 분석한 대학은 건국대(언론법제론), 경남대(언론윤리법제), 경북대(언론윤리법제론), 경성대(커뮤니케이션윤리법제), 경희대(미디어윤리법제), 고려대(언론법제), 광운대(미디어윤리법제론), 대구대(언론윤리법제론), 대전대(미디어법제론), 동명대(미디어정책법제론), 동의대(언론법의 이해와 활용), 목원대(광고윤리법제), 부경대(언론윤리법제론), 부산대(언론윤리법제), 서강대(언론법제론), 순천향대(언론법제론), 원광대(언론윤리법제론), 이화여대(미디어법제론), 인천대(미디어윤리법제론), 청운대(매체법제론), 한양대(언론법제) 등 21개 대학이다. 이에 대한 문의는 jilee@hanyang.ac.kr로 하면 된다.

어 및 사이버 언론법 그리고 (10) 언론중재제도 및 반론권 제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론법제 교육이 체계화 되어있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Dines, Levin & Lind, 1997) 2005년의 분석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미국의 경우 다인스(Dines, 1997) 등에 따르면 언론법제 교육에서 가장 빈번히 다루어지는 10개 주제는 (1)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침해, (3) 수정헌법 제1조 이론, (4) 언론 자유와 공정한 재판, (5) 정보공개법, (6) 저작권법, (7) 방송 규제법, (8) 보도의 자유와 취재원 보도, (9) 광고법제 그리고 (10) 뉴미디어 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개 주제 중에서 공정한 재판, 음란, 알권리, 언론중재제도와 반론권 영역에서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강의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겠다.⁷⁾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과 미국에 있어 언론법제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즉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론현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 불필요한 언론관계 소송을 피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교과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온라인에서의 언론법제 관련 쟁점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법적 쟁점들과 이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들이 강의 내용의 점차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죄, 반론권 등과 관련된 언론법 적용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법의 제·개정 필요성 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저작권, 성 표현,

스팸메일 규제 등에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은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이재진, 2006).

언론법제 영역에서 언론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해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공인' 또는 '공적 존재'(public figure)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공인의 개념을 점차 미국 언론법에서 지칭하는 공인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서도 실제로 그 법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 공인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진실입증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언론 측에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법에서의 공인들은 손해배상을 얻기 위해서는 언론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해야 하는 반면 한국 법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단지 보도된 내용이 진실하고 공익에 관한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표성수, 1997). 그럼에도 2000년 이후의 판결에서는 공적인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요건을 완화시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차용범, 2002; 이승선, 2005; 이재진, 2006).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국민의 알권리와 반론권 제도는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는 언론중재제도 또는 반론권 제도가 한국에서는 언론법제 교육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Lee, 2005). 또한 알권리의 경우 미국에서는 이를 명확히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비록 현행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⁸⁾ 아울러 독특한 언론중

7) 독특한 점은 광운대(미디어윤리법제론)와 한양대(언론법제)의 경우 교과내용에 '혐오언론'(hate speech)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혐오언론이란 인종적, 문화적, 성적, 장애인 유무의 차별에 따른 비하적인 표현이나 욕설을 의미한다(이재진, 2002).

8) 1991.5.13. 선고 90헌마133 결정. 알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재진(2006, pp. 27 ~ 67) 참조.

한국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반론권,
언론중재제도 등이 언론법제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 되고 있어

재제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피해구제 체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특히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반론권 신청자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인터넷에서의 반론권 적용의 문제, 반론권 적용의 범위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 내용 중 언론윤리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물론 몇몇 대학은 언론윤리에 대한 독자적인 강의를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달리 언론인들에 대한 윤리교육은 법제교육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론윤리와 관련된 교재는 번역서를 제외하면 김지운의 ‘글로벌시대의 언론윤리’ (2004), 김옥조의 ‘미디어 윤리’ (2004)가 거의 전부인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윤리교육을 미국에서처럼 별개의 독자적인 과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언론법제 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자면 언론법제 교육에 언론윤리가 포함되어 1주 또는 2주 정도에 걸쳐 교육이 할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

대학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이며 현재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가? 언론법제 분야가 언론과 법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골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을 전공하거나 언론사의 경험이 있으며 동시에 법학 영역을 공부한 사람 또는 법 전문가 중에서 언론학으로 학위를 한 사람들이 언론법제 교육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언론관련 학과에서 언론

법제를 강의하는 사람들은 언론사 경험이 있고 법과 대학에서 J.D.(Juris Doctor/법무박사)나 법학박사 학위를 한 사람들 또는 언론을 전공하고 이후 J.D.를 취득하거나 적어도 법과대학에서 필수적인 교과목을 수강한 후 언론법제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염규호, 1999).

우리의 경우 미국의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들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물론 전공분야로서 언론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론법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언론 현업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언론법제 교육이 비교적 일찍 시작되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양대학교의 경우 ‘언론윤리법제’ 과목은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 언론법제 분야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장용 교수가 담당하였다. 장 교수는 1969년 ‘언론과 인권’이라는 언론법제 관련 최초의 전문서적을 출간하였는데 당시 미국의 언론법제 분야의 쟁점들과 논의들을 책에서 소개하고 이를 한국의 법 현실과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 교수는 책에서 미국의 언론자유론, 알권리, 명예훼손과 공직자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다루었고 법 규정보다는 언론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소개하였다. 한국의 경우 법체계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판례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다고 하겠다.

장용 교수 이외에도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언론학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기존의 일본 저널리즘 교육의 영향을 받은 언론학 커리큘럼도 변화하게 된다. 언론법제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후 점차 미국에서 언론법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된다(한국언론학회, 2001). 장 교수가 1977년 작고한 이후 한양대학교에서의 언론 법제 교육은 팽원순 교수에 의해 이어졌다.

현직 언론인 출신인 팽원순 교수는 한양대학교에 재직하면서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팽 교수는 언론법제 관련 최초의 교과서를 출간 하였다. 1984년 집필한 '매스컴유통 커뮤니케이션 윤리법제' 는 출간 후 20년이 넘도록 언론법제 교육이 실시되는 대학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 팽 교수는 또한 언론 법제 교육을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에까지도 도입 하는데 공헌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언론법제 관련 과 목들을 대학원 커리큘럼에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대학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의 토대는 장용 교수와 팽원순 교수에 의해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두 사람 이외에도 이화여자대 학교의 김동철 교수, 경희대학교의 한병구 교수 그리고 원광대학교의 김병국 교수 등이 대학에서 언론법 제 교육을 담당했는데 이들을 통칭하여 한국 언론법 제 교육을 담당한 '제1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제1세대 교육자들의 공통점은 대개 언론 현업 에 종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저널 리즘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쟁점과 관련된 주제 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 해 등이 언론법제 교육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제1세대 교수들의 대부분이 은퇴하거나 작고한 상 황에서 '제2세대' 언론법제 교육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중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경우와 한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학위를 한 경우로 양분된다. 소위 2세 대 교육의 초기는 한국에서 언론법제를 전공하거나 강의를 담당하던 건국대 유일상 교수, 경희대 임병국 교수,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 한일장신대 김동민 교 수, 경남대 김영주 교수 등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그 러다가 중반 이후에 들어와 현재 순천향대에 재직

중인 장호순 교수가 1993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 치고 돌아오면서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은 그 교육방 식에 있어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언론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언 론학 전 분야에 걸친 변화와 무관치 않다. 2002년 조 사에 의하면 서울에 위치한 대학 중 언론학 관련 학 과에 재직 중인 교수 115명 중 96명이 미국에서 학 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2). 단지 20명의 교수들이 한국(n=12), 독일(n=3), 일본(n=1), 프랑스(n=1) 그리고 영국(n=2)에서 학위를 하였 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울지역 19개 대학의 언론관련 학과 교수 중 약 85%의 교수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한 것이다.

지방대학의 경우에도 역시 196명의 교수 중 미국 에서 학위를 한 교수들이 압도적이었으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은 30%에 머물렀다.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은 10명에 지나지 않았다. 2005년 조사연구에서도 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Lee, 2005). 현재 이러 한 비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미국에서 학위를 한 교수들이 연구나 강의에 있어 압도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들이 관련분야 전공으로 학 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논문을 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관련된 수업을 듣고 훈련을 해가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교육철학이나 커리큘럼 등 교 육적인 배경이 차후에 강력히 작용하게 된다. 이는 미국 중심의 실증주의적 연구방법과 미국식의 커리큘 럼 그리고 교과서가 언론학 분야의 주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언론법제 교육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미국에서 Ph.D.나 J.D.를 마치고 한 국에 돌아와서 언론법제 강의를 하는 교수의 수가 조금씩 늘어났다. 비록 전공은 하지 않았으나 미국에 서 학위를 마친 경우 자신이 수강했던 언론법제 관

상당수의 언론학 및 언론법제 전공자들이 미국에서 학위 받아

런 강의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가 한국에서의 언론법제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07년 11월까지 미국에서 언론법제 영역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은 장호순 교수(순천향대), 우지숙 교수(서울대), 이재진 교수(한양대), 엄기열 교수(대구대), 김경호 교수(제주대), 손태규 교수(단국대)이다. 이들 중 장호순과 손태규 교수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이재진과 김경호 교수는 Sou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그리고 엄기열 교수는 University of Iowa에서, 우지숙 교수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우 교수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J.D. 학위도 동시에 취득한 바 있다.⁹⁾

미국 이외에도 일본이나 러시아 그리고 독일 등에서 언론법제를 전공하고 돌아와서 언론학 분야에서 법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소수 있으나 명확히 집계는 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독일에서 학위를 취득한 나낙균 교수(인제대)와 러시아에서 학위를 취득한 선봉희 박사(외국어대 강사)가 언론법제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에서 언론법제 전공으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김형일 교수(극동대), 조연하 박사(이화여대) 등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2004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에서 언론법제 관련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한 경우는 언론학분야, 법학분야 및 행정학분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97명에 이르고 이들 중 언론학 전공의 박사학위 취득자는 26명으로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선, 2005). 그런데 학위 취득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서 언론법제를 강의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논문은 언론법제 전공으로 썼으나 차후에 언론법제를 강의하지 않거나 다른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이와 반대로 유사한 전공을 했으나 언론법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위취득자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법제분야에 정책이나 광고법 전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명확한 수치를 판단하기 힘들게 한다.¹⁰⁾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대학에서 언론학분야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론법제 전공으로 교수를 채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단 한 번 서강대학교에서 2000~2001년 사이에 언론법제 전공 교수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현재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대부분 저널리즘, 언론이론, 또는 뉴미디어 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비록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현실적 요청은 높았으나 대학에서 이들 언론법제 전공자들을 수용하는 정도는 극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9) 이승선(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서 2005년까지 언론학 관련 저널들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언론중재』를 분석한 결과 언론법제 연구는 미국에서 학위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10) 한국에서 언론법제 분야에서 학위를 한 교육자들 중 주목할만한 사람은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다. 1999년 박사학위 이후에도 법학 분야에서 다시 학사와 석사를 하고, 언론법제 분야에서 대단히 광범위하고 활발한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언론법제 교육자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연구해야 하는가에 있어 모범이 될만한 사례이다.

4) 언론법제 교재 및 교과서

언론법제 교육에 있어서 교재와 교과서는 언론법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저자가 어떤 내용의 저술을 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언론법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가 된다. 현재 언론법제 강

의에서 주교재나 부교재로 이용되는 교과서들은 아래 <표 2>와 같다.

이러한 교재들의 대부분은 개인과 국가 사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을 다루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법조계 인사나 연구자들에 의해 저술된 교재들도 다수 있으나 언론법제 수업에서 부교재나 참고문헌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2>는 이러한 참고 도서들은 제외하고 언론학 분야에서 저술된 교재만을 소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재나 부교재로 쓰이고 있는 책들은 모두 21종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권

<표 2> 언론법제 교육 관련 주교재 및 부교재

| 저 자 | 제 목 | 발행년도 | 출 판 사 | 비 고 |
|-------|-------------------|------|----------|-------|
| 강 준 만 | 대중매체 법과 윤리 | 2001 | 개마고원 | 편 저 |
| 김 동 민 | 언론법제의 이론과 현실 | 1993 | 한나래 | 편 저 |
| 김 동 철 | 자유언론법제 연구 | 1987 | 나남 | |
| 김 옥 조 | 미디어 법 | 2005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김 옥 조 | 미디어 윤리 | 2004 | 커뮤니케이션북스 | 개정증보판 |
| 류 한 호 |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 2004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유 일 상 | 언론정보윤리론 | 2001 | 아침 | |
| 유 일 상 | 언론법제론 | 2000 | 박영사 | |
| 이 구 현 | 미국언론법 | 1998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이 용 성 | 신문법 연구 | 2006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이 재 진 | 언론 자유와 인격권 | 2006 | 한나래 | |
| 이 재 진 | 언론과 명예훼손 소사전 | 2003 | 나남 | |
| 이 재 진 |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 2002 | 한양대 출판부 | |
| 임 병 국 | 언론법제와 보도 | 2002 | 나남 | 개 정 판 |
| 장 용 | 언론과 인권 | 1969 | 선명문화사 | 절 판 |
| 장 호 순 |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 2007 | 개마고원 | 개정증보판 |
| 장 호 순 | 언론의 자유와 책임 | 2004 | 한울 | |
| 팽 원 순 | 언론법제신론 | 1989 | 나남 | |
| 팽 원 순 |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 이론 | 1984 | 법문사 | |
| 한 병 구 | 언론법제이론 | 1987 | 나남 | |
| 한 병 구 | 언론과 윤리법제 | 1995 | 서울대 출판부 | |

언론법제 교재 내용의 변화는
언론법제가 정치·사회적 체제 변화
반영한다는 방증

(약 62%)이 2000년 이후에 출간되었으며, 1990년대 4권,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에 4권이 출간되었다. 1990년대까지 언론법제 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다시 말하자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언론법제 교육이 관심을 끌게 되고 언론법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이승선, 2005) 교과서의 출판도 급증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모든 교과서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석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인가는 판단하지 못했지만 그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각 시기별 교과서의 특징을 구분해 보면 198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책들은 주로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이들 법률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로서 많은 부분을 언론자유론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 법과 비교하면서 한국 언론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사회적 화두였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1990년대 발간된 교과서들은 점차 국가와 개인 기본권 그리고 국가와 언론 간의 문제와 함께 개인과 언론과의 다툼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 논리적 논의들을 다루었는데 이러한 점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언론의 자유가 확립되어 가고 또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으려는 노력들이 늘어난 것을 반증한다. 2000년대 이후 쏟아진 언론법제 관련 저서들은 기존 주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한 학술적 접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그 동안 판례가 집적되어 판례연구를 통한 논의들이 확산된 것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제반 언론법제에 관한 논의들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론법제 교재 내용의 변화는 언론법제가 정치·사회적 체제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언론법제 강의계획서를 문의한 대학에서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교과서들 중에서 언론법제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5종의 교과서는 '대중매체 법과 윤리'(강준만, 2001), '언론법제와 보도'(임병국, 2002),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재진, 2006),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이재진, 2002), '언론법제론'(유일상, 20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강의계획서를 보내 온 대학들에 나타난 주교재만을 중심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¹¹⁾

법조계 학자들이 저술한 언론법제 관련 저술들도 때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그 사용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저술로는 '언론법'(신평, 2007),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문재완, 2002), '명예훼손법'(신평, 2004), '언론정보법연구 I·II'(박선영, 2002), '표현의 자유'(박용상, 2002), '언론정보

11) 이들 5종 교과서의 내용을 그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언론자유론,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저작권, 방송법, 성표현물 규제, 언론중재제도(반론권 제도), 언론윤리, 언론보도, 인터넷 관련법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법' (성낙인, 1998), '언론과 개인법익' (박용상, 1997), '미디어법학' (방석호, 1995)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저서들은 언론학분야의 법제시간에는 부교재로 이용되거나 이용 빈도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 분야의 교육에 있어서는 헌법학에서의 부교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들 이외에도 최근에 언론법 관련 교재들의 출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이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증거라고 할 수 있다.¹²⁾

실제로 2002년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는 언론법제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던 교재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약 10여 종이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이용되었다(Lee, 2002). 이는 지난 5년간 교재의 종류와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교재들이 실제로 언론법제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용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¹³⁾ 그럼에도 언론법제 강의계획서에서 교재로 소개된 책들이라는 점에서 이전에 비해 양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 언론법제 관련 교재들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빈약하게 보인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www.amazon.com)을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한 결과 2007년 11월 말 현재 'Mass Media Law' 관련 서적은 2,029종, 'Media Law' 관련 서적은 10,042종 그리고 'Communications Law' 관련 서적은 13,294

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우리 언론법제 교육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승선(2005)은 한국의 언론법제 교육의 교과서들은 미국의 언론법제 교과서들과 달리 앞부분에 기본적인 법률체계에 대한 소개가 없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언론법제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체계나 법 적용 절차와 방식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미비점은 빨리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한다.

또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미국의 경우 언론법제 교육이 한국의 경우처럼 언론학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되는 교과서는 법학계의 연구자나 교육자들이 저술한 것이든 언론학계의 연구자들이 저술한 것이든 교육에 필요한 경우 골고루 이용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법조계 연구자들이 저술한 언론법학 저서는 언론학계의 언론법제 시간에 많이 이용되지 않으며 대학원 수업에서 부교재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언론법 분야의 법제교육과 법학 분야의 법제교육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법학 분야의 경우에도 언론법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강의를 마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에 있어 법 적용의 논리만을 살피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론법제 교육의 본질은 언론과 법이라는 상이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12) 예를 들어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김옥조, 2006), '언론분쟁과 법' (윤재운·함석천, 2006), '인터넷 언론과 법' (김영석 외, 2004), '인터넷·언론·법' (한국법제연구원,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이광범 외, 2002), '언론 명예훼손 핸드북 Q & A' (이구현, 2002), '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이구현·이재진, 2001), '언론과 명예훼손' (차형근 외, 2000), '법을 알고 기사쓰기' (언론연구원, 1997) 등이 있다.

13) 드물게 학부 수업에서 원서가 부교재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Media Law(Barendt, 1993), First Amendment Handbook(인터넷 사이트),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Gillmor, 1996) 등이다.

언론법제 교육의 제1목적은
언론관련법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며
실제 사례에 작용되는지를 터득하도록 하는 것

3. 언론법제 교육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학 교육 과정에서 언론법제 교육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신문방송 관련학과가 설립되어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언론법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론법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설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수요는 많으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공자가 부족한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론법제 교육은 전문언론인 양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이처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불분명하다. 문제는 학교를 벗어나면 언론법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언론인연구과정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언론재단에서는 현재 3개 부분에서 언론법제 및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는 대부분 언론관련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언론사에 처음 입사한 수습기자들이나 또는 예비언론인들을 위해서 언론윤리법제 강의를 1~2회 정도 실시하고 1회당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한다. 그 외에 중견급의 경력기자들을 위한 언론법제윤리교육도 2~3일 정도에 걸쳐 하루 1~2시간 정도 실시된다. 아울러 언론재단에서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언론인들에게 1회에 걸쳐 언론윤리법제

를 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나 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각 프로그램에서 1회 정도 언론법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¹⁴⁾

이처럼 대학 외부의 언론법제 교육은 상당히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으며 강의시간도 짧아서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언론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법제에 대한 재교육이 개인들의 인격권을 좀 더 보호하도록 하는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한다(남재일·최민재, 2005). 즉, 언론법제 교육은 단지 1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언론윤리법제 교육이 책임 있는 언론인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 대학의 언론법제 교육은 아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장호순, 1998). 늘 지적되는 언론법제 교육의 현실 적합성의 문제와 함께 교육을 위한 환경과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언론법제 과목을 듣는 수강생들 대부분이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나 일본의 법체제와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개별적으로 지식을 쌓지 않으면 언론법제 강의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며 흥미를 갖기 힘들다. 특히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지식의 흡수에 익숙하다 보니 법적인 원리를 논의하고 권리나 의무에 대해

14) www.kpf.or.kr. 이외에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중재제도에 대한 특강(1회 2 ~ 3시간)이나 언론관련 시민단체에서 개설하는 아카데미 과정에서 언론법제 관련 강의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일회성의 언론법제 교육이며 언론법제의 단편적 분야를 강의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서로 논의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 결국 언론법제 시간에는 현재의 법체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언론자유 의 이론적 및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한다.

즉, 언론법제 교육의 제1의 목적은 언론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를 무조건 외우거나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법 조항들이 어떻게 적용되며, 그래서 자유를 어느 정도 보호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법적인 원리를 터득하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언론법제라고 하면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법적인 논리의 적용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학부 수업의 대부분은 언론법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나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여기에는 무엇보다 언론법제가 대단히 복잡하고 딱딱한 과목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의 시작은 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기 초반에 언론법제와 관심을 이끌만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법적인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법제 분야가 법전의 조문을 외우고 시험 보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계에 진출해서 실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기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언론법제 분야가 그 이미지와는 달리 대단히 역동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에는 최신의 중요 판례를 소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비록 우리 법체계가 성문법 중심의 법체계가기는 하지만 199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판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법제 교육에서 판례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조항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러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형평성에 맞도록 적절히 법이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적 의식도 길러주어야 한다. 결국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이 다른 개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상충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법제 교육을 담당할 사람들의 부단한 학습 및 연구를 통한 자기발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중요한 사안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 판례를 적절히 분석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판례를 분석할 때 필요한 보편적인 분석의 틀이 중요한데 이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통해 판례를 세밀히 분석하여 어떤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법 제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적용대상이 되는 법 조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 판결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아울러 비록 한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미국의 법체계에서 발전해 온 언론자유에 대한 원칙론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필요하다.

15) 이러한 측면에서 순천향대 언론법제론 강의에 있어 언론법정 방식의 강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생들로 하여금 3인 1조 형식으로 조를 짜고 언론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 또는 검사가 되어 재판에 준비하고 담당교수는 재판장을 맡고 무작위로 선발된 5명의 학생들을 배심원으로 하여 재판결과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발표하게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하도록 하여 법적인 논리를 현실적으로 체득하게 한다.

언론법제 교육 담당자들은 자기노력 통한 내실화 달성에 힘써야

4. 결론 및 제언

언론법제는 언론과 관련된 현상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임병국, 2002)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다른 개인 기본권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교형량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법제 교육은 언론의 자유에서부터 개인 권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법적 규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법제 교육의 목적이란 언론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어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이론적인 시각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즉, 단순히 언론현업에서 바라는 형태의 언론법제 교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론법제 교육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이루어져 왔는가? 언론법제 교육은 지난 50년이 넘는 상당한 시간 속에서 실시되어 왔고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즉, 언론자유론 영역에 대한 교육이나 명예훼손 영역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점차 취재보도의 자유와 책임, 사생활 침해, 공정한 재판, 정보공개, 반론권, 성표현물, 저작권에서 광고법제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범위와 다양성이 강화되어 왔다. 이는 언론법제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관련된 연구서나 교재들이 2000년 이후 급증한 것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법제 교육이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법제 교육은 다른 언론학 관련 교육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언론법제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언론법제 교육이 변화해 가는

언론환경에 부응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언론법제 교육은 교육 담당자들이 자기 노력을 통한 내실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내실화는 언론에 진출할 학생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에 대한 교육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심도 있는 지식전달이 어려워져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언론법제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 줄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법제 영역에 있어 언론윤리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언론학 관련 교원 충원에 있어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언론법제 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전공분야로 인정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관련 교원들을 대학에서 더욱 많이 수용할 때 한국 언론법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남재일·최민재(2005). 『한국의 언론교육과 저널리즘 스쿨』.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방석호(2004).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 평(2007). 『언론법』. 서울: 삼영사.
- 염규호(1999). 미국 대학의 언론법 교육 현황. 『언론중재』, 18권 가을호, 17-26.
- 유일상(2001). 『언론법제론』. 서울: 박영사.
- 원우현·유일상(2003). 『세계의 언론학 교육』. 서울: 삼영서관.
- 이승선(2003).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방송학보』, 18권 3호(가을호), 293-334.

- 이승선(2005). 언론법제 연구의 현황과 특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권(1호), 227-262.
- 이재진(2002).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서울: 한양대 출판부.
- 이재진(2006). 『언론 자유와 인격권』. 서울: 한나래.
- 임병국(2002). 『언론법제와 보도』. 서울: 나남.
- 장 용(1969). 『언론과 인권』. 서울: 선명문화사.
- 장호순(1998). 언론법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언론중재』, 18권 가을호, 6-16.
- 정진석(1999). 언론법제연구 동향. 『언론중재』, 19권 겨울호, 48-69.
- 차배근(1997). 정보화시대에서 언론학 교육의 방향과 과제. 『저널리즘비평』, 22권, 44-46.
- 차용범(2002).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기준의 변화 추세. 『한국언론학보』, 46-3 (여름호), 414-445.
- 한국언론학회(2001). 『언론학 교과목 현황 자료집』. 서울: 한국언론학회.
- Bedeski, R. E. (1994).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London: Routledge.
- Koo, C. Y. (2000).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communication." In Ang, P. H. and Remanathan, S. (eds.) *Communication Education in ASEAN*. Singapore: AMIC and NTU.
- Dines, C. T., Levine, L., & Lind, R.C. (1997). *News gathering and the law*. Charlottesville: Michies.
- Gillmor, D. M. & Dennis, E. (1989). Legal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s. In Stempel, G. & Westley, B. eds. *Research methods in mass communication*.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Lee, J. (1998). Press freedom,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and socio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1981-1996.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 Lee, J. (2005). An impact of the U.S. on Korean media law education: Korean media law education in the last half-century. A paper presented in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edia and Communication Research, Taipei, Taiwan, July 26-28, 2005.
- Mowlana, H. & Chin, C. (1971). Libel laws of modern Japan and South Korea are compared. *Journalism Quarterly* 48, 326-30, 348.
- Park, K. S. (1993). "South Korea". In Jon V. Heuvel and E. Dennis eds. *The unfolding lotus*. New York: Freedom Forum Studies Center.
- Smith, J. A. (1981). Further steps toward a theory of press control. *Journalism History* 8 (Autumn-Winter), 93-95.
- Youm, K. (1996). *Press law in South Korea*. Ames, IA: Iowa State Univ. Press.